## 보다 안전한 미래 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테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
www.assi.or.kr E-Mail: assi1307@naver.com 담당: 박용복국장 (H·P) 010-8688-5619

문서번호 시협 2019 - 103호

시행일자 2019. 4. 4.

수 신 국토교통부장관

참 조 시설안전과장

선			지	
결			시	
접	일자		^1	
-	일자 시간		결	
수	번호		재	
처 리 과		· 공		
담 당 자		람		

제 목 시설물내진성능평가 기술자의 자격요건 개선 건의

- 1. 국가 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.
- 2. 현재 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과 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]에 따라 실시하는 '시설물 내진성능평가'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술자의 자격이기존 법령과 부조화되어 일선 발주기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을 건의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## 가. 개선(안)

기존규정	개선(안)	사유
「기존시설물(건축물)내진성능	/   L(L)	
평가요령」		
1.1.2 평가자의 자격	[1안] 평가자의 자격을 삭제하는	(1)한국시설안전공단의 교량 등
신뢰할 만한 평가를 위해서 구	(안)	다른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자
조물의 내진성능 평가자는 지진		의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
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	[2안] 관련분야의 경험이 있는	음.
적인 지식을 갖춘 구조기술사	특급기술자	
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		(2)현행 국토교통부의 자격기술
구조전문가로 제한한다. 다만,		자는 역량지수(ICEC) 종합점수
이 요령의 3.1.1에서 규정한 정		(학력+경력+자격+교육이수)제도
형적 구조를 가지는 건물의 경		를 통하여 특급, 고급, 중급, 초
우 일반 건축구조전공자도 이		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
요령에서 제시하는 예비평가시		며 관계 법령, 교육도 이에 따르
트를 사용하여 예비평가를 할		고 있음.
수 있다.		

## 나. 참고로

- (1) 현재 대부분의 내진성능평가는 국토교통부(한국시설안전공단)의 '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요령'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.
- (2)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용역시에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는 특정 자격이 기술사를 배제하고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, 설계 또는 보강 설계에서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  - 첨부 (1) 내진성능평가 관련 법규 비교 1부.
    - (2)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제도 비교 1부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